

외래교수 위촉에 관한 규정

제정 1996. 04. 03.

제10차 개정 2019. 06.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외래교수의 자격과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9)

제2조(정의) 외래교수라 함은 상시 근무를 하지 아니하며 담당과목의 강의 및 이에 따르는 지도를 맡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2.29, 2004.9.6)

제3조(자격) ① 외래교수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0.2.29, 2004.9.6)

② 전항의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총장이 추천 사유를 참작하여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04.9.6., 2018.08.29)

1. 담당교과목의 성질상 전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구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04.9.6)

2. 사계의 권위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일 때

3. 외국국적을 가진 자는 대우교수임용규정 제3조(자격)를 적용한다. (호 신설 2012.8.24.)

③ 전문자격증, 국가고위공무원, 고령자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4.2.10)

제4조(위촉) ① 외래교수의 위촉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

② 외래교수는 전공(학과)교수회의를 거치고 학과(부)장(전공주임교수)이 추천하고, 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2.2.6)

③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해당학기 개시 전에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학기초에 일괄 위촉 할 경우에는 위촉장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04.9.6)

④ 특별한 경우에는 학기 도중에도 위촉할 수 있다.

⑤ 외래교수로 위촉된 사람은 **개강** 후 4주 이내에 고용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09.5.7.) (개정 2019.06.25)

(조 개정 2000.2.29.)

제4조의2(임상실습 현장지도 외래강사위촉) ① 보건과학대학장은 간호학과의 임상실습 현장지도를 위하여 임상실습 현장지도 외래강사를 제청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② 보건과학대학에서는 임상실습 현장지도 외래강사 위촉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하며, 별도의 강사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 신설 2009.5.7)

제5조(구비서류) ① 외래교수를 위촉 할 때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29)

1. 이력서 1부

2. 최종학위증명서 1부

3. 경력(재직) 증명서 1부(타 대학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02.2.6, 2004.9.6)

4. 추천서 1부 (개정 2002.2.6)

5. 사유서 1부(제3조 2항의 경우에 한함)

6. 수업계획서

7. 주민등록등본 1부 (신설 2002.2.6)

② 재위촉 할 경우에는 추천서로 제 1항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2.2.6)

제6조(위촉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래교수로 위촉(재위촉) 할 수 없다. (개정 2000.2.29, 2004.9.6)

1. 삭제 (1999.2.23)

- 2. 인사서류 부실작성 또는 허위 기재로 해촉된 사람 (개정 2004.9.6)
- 3. 종래의 출강률이 2/3에 미달되는 사람 (개정 2004.9.6)
- 4. 종래의 강의 및 강의평가 내용이 충실치 못하였거나 교수의 품위 및 능력이 결여된 사람 (개정 2004.9.6., 2018.08.29.)
 - 가. 최초 위촉자인 경우 강의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사람 (신설 2018.08.29.)
 - 나. 최근 출강한 두학기 강의평가 점수가 평균 70점 미만인 사람 (신설 2018.08.29.)
- 5. 기한 내 수업계획서, 성적 입력 등과 같은 학사업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 (신설 2018.08.29.)
- 6.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호 신설 2004.9.6.) (변경 2018.08.29.)

제7조(해촉)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총장이 이를 해촉 한다.

- 1.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이 미달되어 외래교수의 교과목을 담당해야 할 때
 - 2. 외래교수가 담당할 강좌가 합강 또는 폐강된 때
 - 3. 외래교수가 본교의 학칙 및 제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때
 - 4.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호 신설 2004.9.6)
- (조 개정 2000.2.29)

제8조(담당시간) 외래교수는 주당 9시간 이하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락을 받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0.2.29)

제9조(강사료 지급) 강사료 지급에 대한 사항은 강사료지급규정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199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7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199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0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과-587, 2009.5.1)

이 규정은 2009년 5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122, 2012.8.24)

이 규정은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121, 2014.2.10)

이 규정은 2014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449, 2018.08.29)

이 규정은 2018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팀-330, 2019.06.25)

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